

# 2002년 정유업계 동향

S K 주식회사 정책협력팀

## 1. 머리말

2002년 국내 석유시장의 화두는 연료유  
료유간 가격 경쟁력의 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세녹스를 위시한 유사석유  
제품의 등장과 확산 문제는 일차적으로 휘발유에 부과  
되는 높은 세금에서 비롯된 것이고, 2001년부터 단계  
적으로 시행중인 에너지세제개편의 재조정 논란 및 특  
정 연료에 대한 세금 감면 주장 등을 모두 세액 조정을  
통해 해당 연료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석유시장의 공정경쟁 틀을 마련하기 위한  
원유와 석유제품간 관세차등화 확대 논의는 여전히 업  
계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었으며, 이를바 신종  
연료로 불리우는 바이오디젤, 오리멀전 및 석탄액화유  
의 등장은 향후 대체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과  
대안제시가 절실히 노출시키기도 하였다.

그밖에도 2002년 하반기에는 이라크 전쟁 분위기 고  
조와 베네주엘라 파업사태로 국제적인 석유 위기의 암  
운이 짙게 드리운 가운데, 국내 석유시장에서는 정부의  
석유제품 품질공개제 시행과 석유정책의 필수공익사

업 존치 논란 등이 주요 논의사항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석유유통시장의 질서회복과 투명화를 위하여  
연초부터 검토되기 시작한 유류전용카드제 도입 등 석  
유유통구조개선방안은 2003년 그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2002년 정유업계 동향

### 가. 유사석유제품의 유통확산

2002년 6월 전국의 10여개 주유소를 통해 유사석유  
제품인 세녹스가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나,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단속이 시작되자 별도의 판매소를 통해 첨가  
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본격적으로 유통·확산되기 시  
작하였다. 이렇듯 첨가제를 가장한 유사석유제품은 관  
련법령의 첨가제 배합기준 및 단속 규정이 모호, 미비  
하다는 점에 기대어 사실상 소비자 단계에서는 휘발유  
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로 인식·사용되는 문제를 불  
러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유사석유제품의 불법 유통 문제는 1998년  
이후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빈번

이후 이러한 움직임에 편승한 각종 유사석유제품의 범람으로 인해 일부 지역 주유소의 수익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의지 표명과 휘발유 동일과세 부과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유사석유제품의 불법 유통은 쉽사리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특별 단속 및 대국민 홍보활동 등 적극적인 근절 노력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용제와 알코올 및 톨루엔 등으로 구성된 세녹스는 기존 여타 유사석유제품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여론몰이와 소송대응을 통해 계획적인 판매를 강행하고 있다.

〈표 1〉 주요 외국의 휘발유 세금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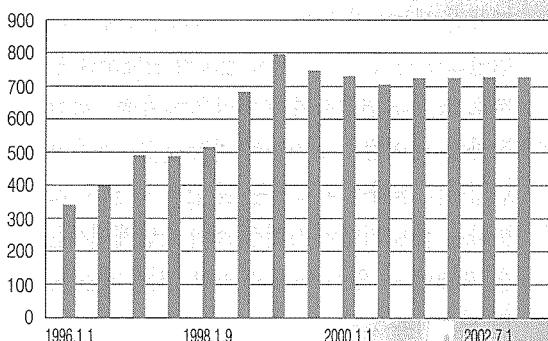
(단위: \$/l, %)

국가	가격	세금	비중	국가	가격	세금	비중
영국	1.18	0.87	73.99	벨기에	0.94	0.59	63.20
노르웨이	1.25	0.85	68.14	스위스	0.82	0.53	64.19
네덜란드	1.01	0.67	66.41	일본	0.90	0.49	55.00
핀란드	1.06	0.67	62.84	오스트리아	0.83	0.49	58.92
한국	0.99	0.66	66.21	아르헨티나	0.84	0.49	57.68
덴마크	0.99	0.64	64.71	스페인	0.75	0.42	55.83
프랑스	0.95	0.63	66.67	멕시코	0.58	0.26	44.34
이탈리아	0.95	0.60	62.88	호주	0.50	0.26	51.85
독일	0.89	0.60	67.16	브라질	0.84	0.25	29.78
스웨덴	0.93	0.60	64.39	대만	0.61	0.24	38.79

자료 : ENERGY DETENTE(2001. 7)

〈그림 1〉 우리나라 휘발유 세금 추이

(단위: ₩/l)



주) 교통세, 주행세 및 교육세 합계기준임 (부가세는 제외)

이후 이러한 움직임에 편승한 각종 유사석유제품의 범람으로 인해 일부 지역 주유소의 수익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의지 표명과 휘발유 동일과세 부과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유사석유제품의 불법 유통은 쉽사리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향후 법정부적인 단속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더불어 고율의 휘발유 세금에 대한 인하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너지세제개편 시행에 따른 경유 세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향후 세금 차액의 탈루를 노린 가짜 경유의 등장도 우려되고 있는 바, 관련 법령의 사전 정비와 엄정한 단속을 통해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 나. 원유와 석유제품간 관세차등화 확대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원유 및 석유제품간 관세차등화 논의는 여전히 업계의 가장 주요한 논의 과제 중 하나를 차지하였다.

현행 관세율 체계는 기본적으로 8%를 중심세율로 하여 비경쟁 원재료의 경우 1~2%의 관세를 적용하고, 1차 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원유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예외적으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표 2〉 우리나라 주요 원재료의 관세율

(2002년 기준)

품목	원유	철광석	석탄	원목	천연고무	원피
관세율	5%	1%	1%	1%(0%)	1%	2%(1%)

주) 팔호안은 실행세율

한편, 2002년 8월에 발표된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유 관세 완전 철폐의 후생효과는 포기되는 세수 1원당 1.258원의 실질 소득증가로 연결되어 비교대상 18개 품목중 포기세수 1원당 실질소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관세 완전철폐시 세수 1원당 실질소득 증가 효과

품 목	세수포기 1원당 소득증가	품 목	세수포기 1원당 소득증가
농림수산품	1.199	화학제품	0.724
광산품	0.459	비금속 광물제품	0.240
원유	1.258	제1차 금속	0.338
천연가스	0.077	금속제품	0.272
음식료품	0.835	일반기계	0.027
석유 및 가죽제품	0.466	전기, 전자기기	0.179
목재 및 종이제품	0.521	정밀기기	0.044
인쇄, 출판, 복제	0.323	수송장비	0.057
섬유 및 석탄제품	0.143	기구 및 기타	0.305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원유 및 석유제품의 적정관세율 연구」

석유산업의 공정경쟁 틀을 마련하고 소비자정제주의 원칙을 확립하여 위기시 국내 석유시장의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국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현행 5%인 원유 관세와 7%인 석유제품 관세의 부과 폭 확대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 다. 에너지세제개편의 재조정 논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제고하고 수송용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구조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시행중인 에너지세제개편은 2006년 7월의 마지막 세액 조정후 최종적으로 휘발유, 경유 및 부탄의 상대 가격비가 100:75:60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

고 있으나, 이러한 연료유간 가격비에 대해 각 당사자들이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보이고 있다.

우선 2002년 하반기 이후 국내 경유 승용차 도입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하면서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버스 및 화물차 업계에서는 정부 보조금 지원제도 및 경유 세금 인상폭의 적정성에 대해 반발의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또한 택시 조합 등과 LPG 업계에서는 부탄 세금의 단계적 인상에 따른 경쟁력 상실을 이유로 부탄 세금 인상폭 축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산업용 LNG에 대한 단계적 세금인하 논의가 국회에서 표면화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쳐 법률로 확정된 안에 대해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수정을 가함으로서 특정 연료 또는 특정 업계에만 이익이 제고되는 효과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라. 신종 연료의 대거 등장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002년은 바이오디젤, 오리멀젼, 석탄액화연료유 등 석유연료와 경쟁관계에 위치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이른바 신종 연료들이 대거 등장한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우선, 폐 식용유나 수입 대두 및 쌀겨 등에서 추출한 물질을 경유에 혼합한 바이오디젤은 시범사업 실시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이미 공급 실용화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며, 베네주엘라의 오리노코강 유역에서 채굴된 천연 역청에 물과 계면활성제 등을 혼합한 연료인 오리멀젼은 향후 발전용 연료로의 본격 도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내 생산 중유의 공급과잉 문

새로운 형태의 연료도입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국가적으로 보급이 장려되는 대체에너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단순히 기존 연료를 대체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는 측면외에 재생·재활용 가능성, 친환경성, 에너지 안보차원의 해외 의존도 감소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남아공으로부터 도입되어 2003년 이후 본격 시판될 예정으로 알려진 석탄 액화유는 연료 성능 및 경제성에 대한 관심과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연료도입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국가적으로 보급이 장려되는 대체에너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단순히 기존 연료를 대체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는 측면외에 재생·재활용 가능성, 친환경성, 에너지 안보차원의 해외 의존도 감소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일용도 동일과세’의 원칙 아래 기존 연료와의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끔 세계형평성이 담보되어야 세금 차이를 노린 유사 석유제품 출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마. 석유정제업의 필수공의사업 존치 논란

이른바 필수공의사업이란,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미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하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철도,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통신사업 등을 필수공의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필수공의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은 쟁의행위 발생시 직권으로 중재 회부가 가능하고 중재 기간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확정된 중재재정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등 특수한 구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 이후 노사정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되어 오던 필수공의 해당사업의 범위조정 및 직권중재 효력의 위헌 여부에 대한 논란은 당사자간 첨예한 입장대립으로

구체적인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02년 8월 폐수처리업을 필수공의사업으로 추가 지정하고 기존 석유정제업 및 공급업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상정되었다.

그러나, 석유 에너지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석유정제 및 공급업의 필수공의사업 제외 논의는 좀 더 신중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4〉 에너지원별 소비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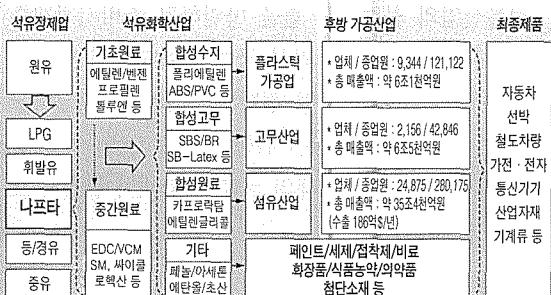
(2001년 연간 기준)

구 分	석유	전력	도시가스	석탄	기타
비 중	61.0%	14.5%	8.7%	13.4%	2.4%

주) 최종에너지 소비 기준임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http://www.keei.re.kr/keei/main.html>)

〔그림 2〕 석유정제/석유화학산업 관련 제품 및 후방산업



## 바. 자동차 연료 품질공개제 시행

연초 환경부는 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공개제를 시행하여 각 정유사 및 주요 석유수입사의 품질수준을

정기적으로 비교·평가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환경친화적인 제품 선택이 가능하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유사간 품질경쟁을 유발하여 자발적인 연료품질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는 일견 타당할 수 있으나, 이미 국내에 공급되는 모든 석유제품은 주요 경쟁국/선진국 등과 비교하여도 뒤떨어지지 않는 엄격한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이중 규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과 불충분한 환경관련 항목 비교를 통해 석유제품의 품질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현재 품질개선을 위한 투자여건 조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유사간 경쟁유발만을 유도하는 것은 가뜩이나 수익성 악화로 고심중인 정유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될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표 5〉 주요 국가의 휘발유/경유 품질 기준

구 분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폴	미국	EU
휘발유	황(ppm) 벤판(%)	130 1.5	100 1	275 1	1,000 5	130 0.8
경유	황(ppm)	430	500	500	500	350

주) 2002년 현재, 미국은 연방기준

## 사. 석유수출입업 동향

수입사 신규 진출 및 시장점유율 확대 추이는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도 지속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석유제품 수입 상위 7개사의 매출액 합계는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1조 8천억원 수준이며, 경질유종은 물론 B-C유 등 중질유의 수입 석유제품 국내시장

점유율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표 6〉 수입 석유제품의 유종별 국내 시장 점유율

구 분	무연휘발유	실내등유	저유황경유	저유황B-C유
2002년	6.49%	8.07%	9.80%	10.56%
2001년	3.28%	5.81%	5.47%	1.32%

자료 :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 (<http://www.petronet.co.kr/>)

한편, 일부 수입사의 석유사업법상 비축의무 미달 및 부과금 등의 체납 문제가 반복 지적되고 있는 바, 적절한 제도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 3. 맺음말

2002년은 위와 같이 여러 복잡다단한 이슈들이 표면화되고 각각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모습을 보여, 이른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과도기적 측면을 드러낸 한 해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1997년 국내 석유시장의 완전 개방·자유화 이후 시장의 혼란에 대해 소위 Rule of Game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였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2003년 한 해에는 유사석유제품의 균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세제 및 유통부문의 합리화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유업계도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